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-1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3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,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별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에 따라 동 복지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던 생활보장위원회의 근거 및 기능 등을 삭제(안 제1조, 제3조제2항, 제4조제2항)
- 나.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심의·건의 사항 중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3조제1항제5호)
- 다. 동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·운영 근거를 마련(안 제4조의2)
- 라. 현재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동 복지협의체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(안 부칙)
- 마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(지역사회복지협의체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

### 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5. 2. 12. ~ 2015. 3. 4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권고안 수정 반영
  - 평가결과 :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3조제2항 각 호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필요
  - 조치사항 :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사항에 대한 의결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제3조제2항을 삭제
- 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5. 3. 12)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”를 “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”로,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”을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,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및 동 복지협의체를”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표협의체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”로,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추천에 관한 사항

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표협의체는 구”를 “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하며, “행한다”를 “수행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7조의2제2항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4항”을 “제7조의2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조의4제2항”을 “제1조의5 제2항”으로, “자중”을 “사람 중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동 복지협의체 구성·운영) ① 구청장은 동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.

② 동 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 내 인적·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, 지원
2. 긴급·위기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
3.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
4.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
5.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
④ 동 복지협의체는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,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⑤ 동 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⑦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 중 “공보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보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 단서 중 “전임위원”을 “전임위원 임기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참석자명단”을 “참석자 명단”으로 한다.

제13조 전단 중 “관계인(이하 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등”을 “관계인 등(이하 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그 밖에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동 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<u>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</u>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<u>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 설치·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 마포구 <u>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u></p> <p>제3조(기능) ① <u>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 <u>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</u> ----- <u>지역사회복지협의체,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및 동 복지협의체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제3조(기능) ①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</u></p>

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(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)에 따른 사항

2.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

③ 대표협의체는 구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

④ (생략)

제4조(구성) ① (생략)

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-----

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추천에 관한 사항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<삭제>

③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-----

-----수행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제2항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구청장, 복지교육국장, 보건소장,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·④ (생략)

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⑥·⑦ (생략)

<신설>

② -----  
----- 제7조의2제2항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제1조의5제2항 -----  
----- 사람 -----  
----- 중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(동 복지협의체 구성·운영) ① 구청장은 동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.  
② 동 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

1. 지역사회 내 인적·물적자원  
발굴 및 연계, 지원

2. 긴급·위기사례 문제해결을  
위한 지원방안 강구

3.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  
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  
니터링

4.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  
사업 추진

5.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  
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 
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  
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  
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 
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
④ 동 복지협의체는 동장을 당  
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, 지역  
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  
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의지가  
있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  
촉한다.

⑤ 동 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  
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 
다.

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

제5조(위원명단 공개) 대표협의  
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  
3조제4항까지에 따른 대표협의  
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 
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  
의 명단을 공보와 구 인터넷 홈  
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  
다.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대표  
협의체 및 실무협의체(이하  
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  
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 
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  
다.

②·③ (생략)

제7조(위원의 임기) 각 협의체 위  
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  
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  
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  
며,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

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 
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⑦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동  
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 
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 
정한다.

제5조(위원명단 공개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서울특별시  
마포구보-----  
-----.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  
-----  
----- 해당 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의 임기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전

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 
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회의 등) ① 각 협의체의  
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 
소집할 수 있으며, 구청장 또는  
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  
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 
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 
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1조(회의록) ① 각 협의체는  
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  
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  
다.

1. (생략)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
3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3조(의견의 청취) 각 협의체  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
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  
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등을  
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  
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  
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 
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

임위원 임기-----.

제10조(회의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1 이상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회의록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참석자 명단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의견의 청취) -----  
-----  
----- 관계인 등(이하 “관  
계인 등”이라 한다)-----  
-----  
----- 그 밖의 -----  
-----.

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7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 규정  
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  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 
으로 정한다.

--.

제17조(운영규칙) -----  
----- 운영에-----  
-----  
-----  
-.